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3-164
- 나. 제안자: 한선미 의원 외 10인
- 다. 제안일자: 2023년 11월 17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월)

2. 제안사유

최근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 및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전세사기 등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과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안 제4조)
- 다.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주택임대차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 바.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 나. 「주거기본법」 제1조, 제2조
- 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8조

5. 검토보고

가. 제정 목적

- 동 조례 제정안은 2023년 11월 17일 한선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 취지는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과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주택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임대인 및 임차인 간 임대료·시설 개보수 등의 분쟁이 증가하고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이 주택 시세와 비슷해지거나 더 높아져 집주인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어 임차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 정부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¹⁾(이하 ‘특별법’)」을 제정·시행

1)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6.1.)함에 따라 마포구 차원의 자치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주택임차인의 임대차 분쟁 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조례는 그 제정 취지와 입법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나. 조문 검토

- 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조례 지향점을 제시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를 명시하였음.
- 안 제2조(적용대상)은 이 조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²⁾의 규정에 의한 마포구의 주거용 건물에 대해 적용함을 명시하였음.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이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서 마포구 내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은 전세피해 유형과 유형별 발생원인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으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안 제6조(실태조사)에서 마포구의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관내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유형 및 발생 원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정책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특히, 현재 깡통전세 가운데 일부가 전세사기 피해 문제로 가시화되고 있으나 주택가격 및 전세가 하락이 지속된다면 일반 임대·차인까지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지원)과 안 제8조(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는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법 종료 이후³⁾에도 임대차계약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게 하였음.
- 안 제9조(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포구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미 마포구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운영(2023.5.1.)하고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전세피해 지원센터’도 설치·운영 중임.(2023.6.1.)⁴⁾
-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은 구청장이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한 것으로 상담, 지원대상 선정 및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임차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2023. 7. 2.]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4) 마포구 주택 임차인 보호정책(붙임1 참조)

다. 종합 검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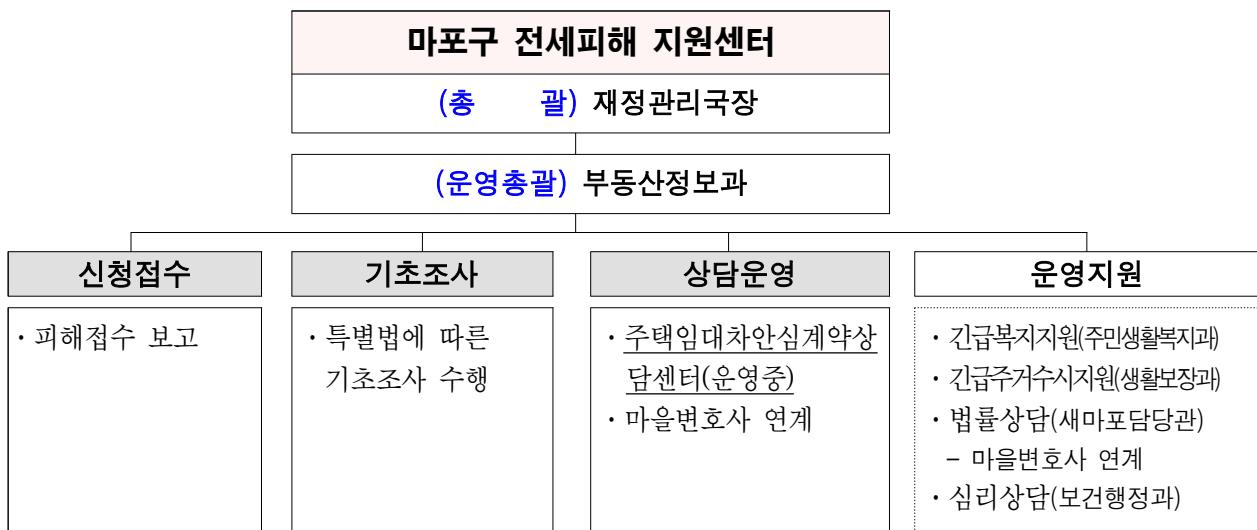
-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본 제정 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별다른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법령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동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음.
- 동 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사업과 피해예방 등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 더불어, 본 조례안은 특별법 운용 종료 이후에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과 주택임차인 보호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특별법과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방안을 검토·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마포구 주택 임차인 보호 정책

① 마포구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 운영총괄 : 부동산정보과(실무총괄, 각 부서 및 민간기관 유기적 협업)



②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운영

□ 사업개요

- 운영기간: 2023. 5. ~ 12.
- 운영일시: 평일(월~금) 13:30 ~ 17:30 (4시간)
- 상담장소: 구청 부동산정보과 상담실
- 지원대상: 마포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 가구
- 지원내용



- 사업비: 14,680천원 (시비)
- 상담센터 운영실적: 지원 140건(2023.10.31. 기준)
 - 계약상담 93건, 동행 서비스 24건, 주거지 탐색 16건, 주거정책 안내 7건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 · 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 · 군도(郡道) · 구도(區道)의 신설 · 개선 · 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주거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 ·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
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5.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① 전세사기피해자, 제2조 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종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